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도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2
----------	------

발의년월일 : 2020년 1월 13일

발 의 자 : 송도호 의원(1명)

찬 성 자 : 정지권·이승미·이은주

송아량·김태호·정진철

성중기·오중석·추승우 의원(9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함으로써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자진반납 이후 이동권 제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음.
- 그러나 2019년도 시행결과 고령운전자 1만5천명이 자진반납을 했음에도 예산의 한계로 재정지원을 받은 운전자는 100분의 50에 불과한 7천5백명에 그쳤으며 이에 따른 민원이 크게 증가한 바,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 모두에게 형평의 문제없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문화하여 당초 취지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 감소에 따른 안전한 교통문화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고령운전자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6호).
- 나. 고령운전자 용어를 반영함(안 제14조제1항).
- 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형평의 문제없는 시장의 재정지원 책무를 규정함(안 제14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고령운전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이”를 “고령운전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운전면허를 가진 반납한 고령운전자 모두가 형평의 문제없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2조(정의)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고령운전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제1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u>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여 실효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하거나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그 밖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1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p> <p>① ----- <u>고령운전자가</u> ----- ----- ----- ----- ----- -----.</p> <p>② <u>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 모두가 형평의 문제없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u></p>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제2항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14조제2항은 현재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기 지급하고 있으나, 신청자 과다 발생시 당초 편성한 예산액 부족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책무를 규정하는 조문으로 신청자 수요예측이 곤란하여 기술적인 추계가 곤란함

※ 2020년 ‘고령어르신 면허증 반납자 지원’ 예산 : 750백만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조사분석팀장 여차민

예산분석관 박주용

☎ 02-2180-7943

e-mail : pjooyong@seoul.go.kr